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법」)이 공포(‘23.10.24) 및 시행(‘24.4.25)됨에 따라 「산업전환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전환 대응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 제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 업무처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을 연계하여 민원인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 경감 및 편의성 제고, 지방관서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안 제7조제1항제9호 신설) 전문위원회에 위임하는 심의사항에 산업전환법 관련한 내용을 신설(안 제7조제5항제9호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의 하나로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추가(안 제25조제6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제7조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
원회

제2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관련 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5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 8.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1. ~ 8. (생략) <u><신설></u> ⑥·⑦ (생략) 제2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7조(전문위원회)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u>9.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1. ~ 8. (현행과 같음) <u>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u> ⑥·⑦ (현행과 같음) 제2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 ----- -----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6. <u>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관련 정보</u>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7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5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7230